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76호
2.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
3. 발의일자 : 2019. 8. 7.
4. 회부일자 : 2019. 8.13.

II. 제안이유

-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용어와 조례 상 용어를 일치시키고
-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학생”으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다문화 특별학급”으로 용어 수정함(안 제2조 등, 제6조).
2. 다문화학생 현황 등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신설).

3.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학교 유형을 명시함(안 제8조제2항 신설).
4.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제9조 신설).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강동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876호로 발의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교육부의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따른 전국의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학생 수는 연평균 약 18만명 감소하였으나,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12만명을 초과(전체 학생 대비 2.2%)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표-1] 최근 5년간 전국 학생 수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6,333,570	6,137,374	5,931,646	5,773,998	5,633,725

[표-2] 최근 5년간 전국 다문화학생 수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학교 급별	초	48,297	60,283	74,024	82,806	93,116
	중	12,525	13,865	15,105	15,983	18,127
	고	6,984	8,388	10,057	10,598	10,969

- 이에 교육부는 외국인·다문화가정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등 다문화학생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우리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학생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¹⁾

[표-3] 서울 다문화학생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초등학교	436,121	10,226	2.34%	428,333	11,093	2.59%	424,800	11,940	2.81%
중학교	239,912	2,129	0.88%	227,001	2,392	1.05%	216,330	2,701	1.25%
고등학교(각종)	299,556	1,407(162)	0.46%	282,968	1,637	0.58%	262,811	1,578	0.60%
계	975,589	13,924	1.42%	938,302	15,122	1.61%	903,941	16,219	1.78%

-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지원은 열악한 수준이며²⁾,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³⁾

1)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 보도자료 : <서울>서울 다문화 교육 여전히 열악(t브로드 지역채널, 2018.11.9.)

“다문화 학생도 우리 아이”... 시혜 아닌 ‘평등’ 차원 접근해야(세계일보, 2017.11.3.)

3)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① 다문화학생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5%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여가부) / 전체 학생 피해응답률 1.3% ('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②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중 76.1%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교육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실태조사,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및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에 대한 의견(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안 제7조는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이하 “한국어예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이하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정규학교 배치 전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으로 초기 적응력 강화를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실천을 위해 유치원 8원,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5교 등 총 65교의 정책학교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현황⁴⁾

구분	유	초	중	고	계
다문화 특별학급	-	15	3	1	19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8	24	6	4	42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	3	1	-	4
합 계	8	42	10	5	65

- 이와 같이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예비학교 및 정책학교의 지정 및 운영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의견(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가 다문화 특색을 살린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8년 4월 기준 서울지역 다문화학생 수는 16,219명으로 다문화학생의 26.4%(4,279명)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구로·금천·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고, 서부, 동작관악,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순으로 다수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표-5] 교육지원청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계
학생수	1,291	1,609	4,279	1,067	1,373	1,062	1,417	513	1,438	1,110	1,060	16,219

또한 국적별 이주배경 국가는 중국·한국계중국(50.0%), 베트남(14.7%), 일본(10%), 몽골(3%) 순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계 이주민 밀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기존)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유치원 → (변경)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표-6] 국적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일본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남부아 시아	중앙아 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 리카	오세아 니아	기타	계
1,624	5,040	3,204	195	486	1,112	2,401	160	376	338	263	249	133	93	42	443	16,219

[표-7] 자치구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자치구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종로구	205	91	91	387
중구	200	60	136	396
용산구	339	79	172	590
성동구	384	48	129	561
광진구	344	52	153	549
동대문구	415	43	157	615
종랑구	533	42	101	676
성북구	430	86	88	604
강북구	371	55	30	456
도봉구	349	77	38	464
노원구	496	75	32	603
은평구	675	81	88	844
서대문구	281	41	54	376
마포구	311	31	47	389
양천구	492	66	51	609
강서구	636	95	77	808
구로구	730	280	722	1,732
금천구	471	83	480	1,034
영등포구	507	140	866	1,513
동작구	305	81	153	539
관악구	482	101	316	899
서초구	177	28	13	218
강남구	226	48	21	295
송파구	398	55	91	544
강동구	432	35	51	518
합 계	10,189	1,873	4,157	16,219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남부지역 다문화교육 통합지원을 위해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예산을 확보(15억원)하여 2019년 10월까지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다문화사회 가속화에 따른 남부3구(구로·금천·영등포구)의 현안 해결 및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탄력적·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밀집지역 다문화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제1항과 제3항의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것과 제2항에 대해서는 제1항과의 중복을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11282, 2012-8.21.).

조례안	수정제시안
<p>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가 다문화 특색을 살린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자율학교는 지역 여건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학교에 다문화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삭 제></p> <p>② 다문화 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이와 관련하여 안 제10조의 조문에는 어문 규범에 적합하지 않고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용어 정비에 대한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정책용어와 조례 상 용어를 일치시킴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학생”으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다문화 특별학급”으로 각각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⁵⁾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는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중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⁶⁾

“다문화가족 학생”의 용어는 동 조례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서는⁷⁾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을 ‘다문화학생’으로 규정하고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6)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7)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있고,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서도 모두 “다문화학생”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금번 개정조례안이 조례 적용의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조례 상 용어와 정책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20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호·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2016. 8. 2.>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 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29.]